

# 대법원 2017도14749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5. 17.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4명(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이 있음.

### 1. 사안의 내용

#### 가. 공소사실 요지

- ▣ 피고인은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최00의 요청을 받고 서00에게 연락하여 ‘미용성형에 사용되는 실로 대통령이 관심이 많은 제품이라니 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로 연결시켜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주)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박00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 서00에게 김00, 박00 부부를 소개시켜 준 적이 없고, 서00에게 전화한 적이 없으며, 서00에게 리프팅 실 사업 도와주라고 소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음.

## 나. 사건의 경과

- 이 사건 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은 2016. 11. 17.부터 2017. 1. 15.까지이고, 이 사건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2017. 1. 20.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의결되었음.
- 이 사건 특별위원회의 위원이던 18명 중 13명이 2017. 2. 28. 연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고발을 하였음.

## 다. 하급심의 판단

- 제1심 : 유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항소심 : 공소기각
  - 이 사건 고발은 이 사건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고발이 아니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임.

## 2. 대법원의 판단

### 가. 사건의 쟁점과 법률 규정 등

-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의 고발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의 소추요건인지
-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고발을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해야 하는지
- 법률 규정
  -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sup>1)</sup>·제13조<sup>2)</sup>·제14조 제1항 본문<sup>3)</sup>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

1) 불출석 등의 죄

2) 국회모욕의 죄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

#### 나. 다수의견(9명) : 고발은 소추요건이고,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고발을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하여야 함 ⇒ 상고기각

##### ▣ 고발은 소추요건임

-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관한 국회 내부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관한 고발 여부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고, 위증을 자백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자백을 권장하고 있음.
- 따라서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함.
- 구 국회증언감정법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결한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고발을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하여야 함

- 문언의 통상적인 용법에 부합하는 해석임.
  - 재적(在籍)의 사전적 의미는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을 뜻함. 국회법 여러 조항에서 재적위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모두 위원회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재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함.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도 동일한 문언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임.
  -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하므로 고발도 특별위원회가 존

---

3) 위증 등의 죄

속하는 동안에 하여야 함. 특별위원회가 소멸하는 경우 법령에서 그 권한 또는 사무를 승계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이상 더 이상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입법자료에 의하면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의 고발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지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거나 고발을 위한 위원회의 권한 또는 사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라 보기는 어려움.
-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과거 특별위원회가 존속할 당시 재적위원이었던 사람이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소추요건인 고발의 주체와 시기에 관한 범위를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확대하는 것임. 이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됨(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등 참조)
- 위원회가 소멸된 이후에도 고발을 가능하게 하여 위증한 증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하여도 이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임. 현행법의 유추해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

#### 다. 반대의견(4명) : 파기환송 의견

##### ■ 고발은 소추요건이 아니라고 보아야 함(1명)

- 국회증언감정법에는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정한 다른 특별법 규정들과 문언이 다름.
-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는 형사소송법 고발 규정에 대하여 국회가 위증죄 등을 고발할 경우에 그 고발의 주체, 대상범죄 등을 정한 특별규정임. 고발의 성질과 효력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함.
- 따라서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고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의 고발은 소추요건이 아님.

■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에도 위원회의 재적위원이었던 사람이 연서하여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3명)**

-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관하여 형법상 위증죄보다 법정형을 무겁게 하고 고발요건을 완화하여 엄하게 처벌하려는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으로서 허용되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고발을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명문에 없는 고발기간을 창설하는 것임.
- 단기간으로 정해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내에 혐의가 드러나기 어려운 상당수 위증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됨.
  -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의 장단, 증언한 시기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위증한 증인들 사이에서 소추와 처벌이 형평에 반할 수 있음.
  -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한 경우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백을 권장하고 있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고발기간으로 보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전에 자백해도 재량에 따라 고발되는 반면 자백하지 않으면 위증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고발되지 않아 후자가 더 유리할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자백을 권장하는 취지에 반함.
- 특별위원회가 소멸하여도 위원회의 재적위원이었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그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3. 판결의 의의

-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대한 고발이 소추요건이라는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다시 확인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고발을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해야 한다고 선언하였음.
- 처벌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소추요건의 범위를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선언함

- 처벌의 필요성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고 현행법의 유추해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을 재차 천명함.